

의안번호	2208982
의 퇴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5.4.3.
추계번호	25D1570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제1항 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	국가 등은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·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61조제2항 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 신설	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1조제1항 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1조제2항 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 신설	미대상 기존 인력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

2. 상세 사유

□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특별지원(안 제61조제1항)

- 개정안은 국가 등이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·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확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,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이유가 되는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준과 범위, 특별지원 항목별(행정·재정·금융·의료) 대상자 수,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행정안전부의 「재해연보」에 따르면 최근 10년(2014~2023년) 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는 총 27건으로 자연재난 관련이 20건이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